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공개모집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26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2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22.
- (3) 회 부 일 : 2026. 1.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

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
조의11).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u>지정하여</u>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 ----- ----- <u>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u> ----- ----- ----- -----.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⑤ -----

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u>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u>위탁</u>----- ----- -----.
--	---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총 20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 중 18개 기관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되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 다만,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충북 및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는 위탁 법인의 안정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였다는 입장임.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범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5.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영 주체 선정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대응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에 있어 공개모집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여전히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남아 있

으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공개모집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예외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불명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공개모집 원칙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우선 위탁 대상 사업 중 장애인 관련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공개모집 절차의 법제화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과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사회서비스원 포함)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2026년 2월 기준

기관명	최초 개소일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공모여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2.27.	26.01.01. ~28.12.31. (3년)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공모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1. 1.	20.01.01. ~25.12.31. (5년) *위탁연장 26.01.01.~.03.30.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공모 (26년 2월 공모 예정)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12.	24.03.01. ~27.02.28. (3년)	부산 사회서비스원	공모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26.01.01. ~28.12.31. (3년)	대구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공모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8.24.	21.09.08. ~26.09.07. (5년)	인천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17.	26.01.01. ~28.12.31. (3년)	광주 장애인인권센터	공모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8.31.	26.01.01. ~28.12.31. (3년)	전국장애인부모 연대	공모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1.23.	25.01.01. ~29.12.31. (5년)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	공모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22.	23.01.01. ~26.12.31. (3년)	세종 장애인부모회	공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 관	2017.12.15.	25.01.01. ~27.12.31. (3년)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공모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 관	2019. 1. 1.	25.01.01. ~27.12.31. (3년)	경기 장애인자립생활 센터협의회	공모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25.01.01. ~29.12.31. (5년)	강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공모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1.22.	26.01.01. ~30.12.31. (5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12. 9.	26.01.01. ~30.12.31. (5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기관명	최초 개소일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공모여부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 1.	24.01.01. ~26.12.31. (3년)	충남 장애인단체 연합회	공모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 6.	23.08.22. ~26.08.21. (3년)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공모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4.	24.01.01. ~26.12.31. (3년)	전남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	공모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21.	24.01.01. ~26.12.31. (3년)	경북 장애인부모회	공모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9.27.	24.01.01. ~26.12.31. (3년)	경남 장애인권리옹호 네트워크	공모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3.14.	25.07.28. ~26.12.31. * 기존 법인 잔여 기간 재수탁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공모

자료: 보건복지부